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

의 안 번 호 247

제출년월일: 2024. 2. 제 출 자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**2024년도 평창군**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202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1차 변경계획은

- 토지 처분: 1건, 10필지, 445,987㎡, 6,233,483천원

3. 붙임자료

- 가.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(총괄표) 1부
- 나. 2024년 제1차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 1부
- 다. 군유재산 취득 및 처분 사업계획서(부서별) 1부
- 라. 관계법령 발췌 1부. 끝.

2024년도 군유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(총괄표)

(단위 : m², 천원)

구			변경전				 변경 후	ī.	(단위 : m², 전원) 중△감			
		분	건수 수량		- 금액	건수	수량	금액	건수	 수량	금액	
합계		토지	3	6,898	4,863,420		6,898				, ,	
		건물	3	4,941.26	14,468,731	3	4,941.26	14,468,731				
		기타										
	매 입	토지	3	6,898	4,863,420	3	6,898	4,863,420				
学 片		건물	3	4,941.26	14,468,731	3	4,941.26	14,468,731				
		기타										
	교환	토지										
		건물										
		기타										
	기 타	 토지										
		건물										
		 기타										
		토지				1	445,987	6,233,483	1	445,987	6,233,483	
합	계	건물					,	, ,		,	, ,	
		기타										
	매각	토지				1	445,987	6,233,483	1	445,987	6,233,483	
		건물										
처분		기타										
	교환	토지										
		건물										
		 기타										
	기 타	토지										
		 건물										
		기타										
		기다										

[붙임 나]

2024년도 제1차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 목록

(단위 : m², 천원)

일련 번호		재 산 표 시		예정가격		취득처분사유	비고
번호	지목	소재지	수량	에성/주	처분 시기	게득시판사파	· (소유 자)
Ī	토지처·	분 합계(1건, 10필지)	445,987	6,233,483			
		소계 (1건, 10필지)	445,987	6,233,483			
1	임	대관령면 횡계리 산304	97,984	1,371776	2024		평창군
2	전	대관령면 횡계리 546-208	1,161	69,660	2024		
3	전	대관령면 횡계리 546-209	1,188	71,280	2024		
4	전	대관령면 횡계리 546-210	1,875	112,500	2024		
5	전	대관령면 횡계리 546-211	647	38,820	2024	교육 및 연수시 설 조성사업 유	
6	전	대관령면 횡계리 546-212	3,964	237,840	2024	치를 위한 군유 재산 매각	
7	전	대관령면 횡계리 546-213	934	56,040	2024	, , , ,	
8	전	대관령면 횡계리 546-214	1,121	61,655	2024		
9	임	대관령면 횡계리 산302-2	240,813	3,010,162	2024		
10	임	대관령면 횡계리 산302	96,300	1,203,750	2024		

[붙임 다]

군유재산 취득 및 처분 사업계획서

사 업 명	부서	쪽
1. 교육 및 연수시설 조성사업 유치를 위한 군유재산 매기	회계과 (정책담당관실)	6

시입 「교육 및 연수시설 조성사업」유치를 계획서 1 위한 군유재산 매각

○ 학교법인 동원육영회(한국외국어대학교 운영재단)에서 우리 군에 연수시설 및 교육시설 건립을 제안함에 따라, 학교법인의 연수시설 및 교육시설 유치를 통해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□ 사업개요

○ 위 치 :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304번지 일원

○ 대 상: (토지)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304번지 외 9필지

○ 예정가격 : 6,233,483,500원 ※가감정가격

○ 추진기간 : 2024. ~ 2033.

□ 추진사항

- 평창군·동원육영회 상호 발전 및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: 2022. 8. 24. * 교육·문화분야 협력, 연수시설 건립, 지역경제 활성화 등
- 용인 한국외대부고 견학 및 관계자 면담 : 2023. 2. 15.
- 동원육영회 교육 및 연수시설 마스터플랜 설명회 : 2023. 4. 5.
- 동원육영회 교육 및 연수시설 건립추진단 구성 : 2023. 5. 15.
- 동원육영회 교육 및 연수시설 실무회의 : 2023. 11. 16./ 12. 11. / 2024. 2. 20.
- 동원육영회 교육 및 연수시설 조성 종합지원계획 수립 : 2024. 2. 15.

※ 동원육영회 교육 및 연수시설 조성 제안 사업 개요

■ 소 재 지 : 대관령면 횡계리 산304번지 일원 / 445,987m²(약 134,911평)

■ 투자규모 : 민간투자 약 3,600억원

■ 제 안 사 : 학교법인 동원육영회(이사장 김종철)

■ 사업기간: 2024. ~ 2033.

■ 사업내용

- (1차 사업) 동원육영회 연수시설 건립(수련시설, 숙박시설)
- (2차 사업) 국제학교,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건립(교사동, 복지동, 강당동, 지역상생구역 등)
- 사업 추진 계획
- 사업대상지 부지 매입 및 1차 사업 추진 : 2024. 3. ~ 2027.
- 2차 사업 추진 : 2025. ~ 2033

□ 처분대상 재산내역

○ 토지(10필지)

(단위 : m², 원)

소재지	지번	지목	기정	편입 면적	재산	매각	人 〇 刁	
소개시 			지적		기준가격	예정가격	시기	소유자
계	10필지		445,987	445,987	2,752,231,320	6,233,483,500		
	산304	임	97,984	97,984	538,912,000	1,371,776,000		
	546-208	전	1,161	1,161	46,207,800	69,660,000		
	546-209	전	1,188	1,188	47,282,400	71,280,000		
	546-210	전	1,875	1,875	82,875,000	112,500,000		
대관령면	546-211	전	647	647	28,597,400	38,820,000	2024	평창군
횡계리	546-212	전	3,964	3,964	175,208,800	237,840,000	- 2024 평창군 -	
	546-213	전	934	934	41,282,800	56,040,000		
	546-214	전	1,121	1,121	52,350,700	61,655,000		
	산302-2	임	240,813	240,813	1,285,941,420	3,010,162,500		
	산302	임	96,300	96,300	453,573,000	1,203,750,000		

[※] 예정가격은 가감정 평가사항으로 변동될 수 있음.

□ 향후계획

○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반영(의회 의결) : 2024. 3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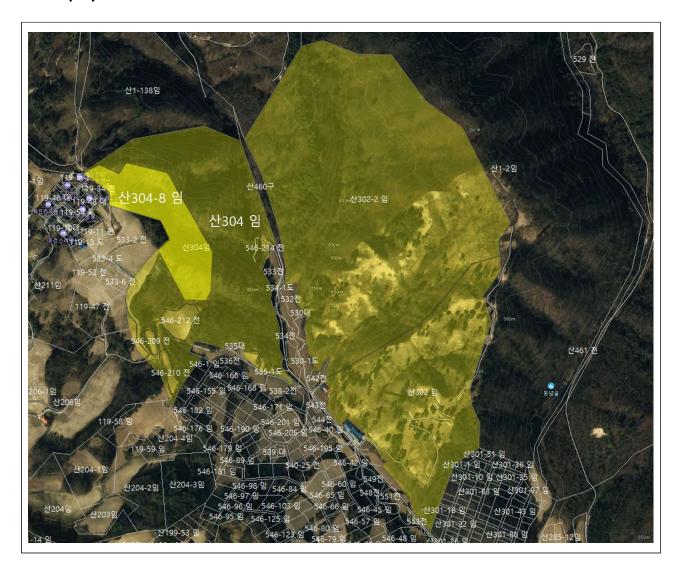
○ 공유재산 감정평가 : 2024. 3월

○ 공유재산 매각 : 2024. 3 ~ 4월

□ 위치도



□ 지적도



※ 횡계리 산304-8번지(**산림탄소상쇄의 숲**) 토지분할 및 매각대상 제척

- 산림탄소상쇄제도 :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, 기업· 산주·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활동을 하고, 이를 통해 확보하는 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정해 주는 제도

- 사업주체 : 한국예탁결제원

- 유지기간 : 2012년 ~ 2042년

- 사업면적 : 2.46ha

- 조림수종 : 자작나무 등

〈관계법령 발췌〉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3조의2(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·처분의 기본원칙)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·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.

- 1.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
- 2.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
- 3.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
- 4.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

제10조의2(공유재산관리계획)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공유재산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- 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5조에 따른다.
-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 4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법 제10조의2 제1항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공유재산관리계획"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〈개정 2022. 4. 20.〉

- 1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
- 2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
 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 - 1.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
 - 2. 취득·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
 - 3.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
 - 4.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. 다만, 공사 중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.

□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

제12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추가 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22.12.30.>

-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
-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.
- 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
- 가. 취득의 경우: 10억원
- 나. 처분의 경우: 10억원
- 2.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
- 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1천제곱미터
- 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2천제곱미터<신설 2022.12.30.>